

2022년도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5. 25.(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9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72건(안건번호 제2022-45532호~4602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45532호~45533호(순번 1번~2번)는 웹하드 사이트에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77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9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1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77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2번은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총 2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PDF 파일 형태의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1번~2번은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3번~49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770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게임, 만화, SW,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스타듀 벨리 Stardew Valley (2016)'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저작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16. 2. 27. 출시한 게임이며,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 중임.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0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저작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2. 4. 13. 개봉한 미국 판타지 영화임.

(출판 '황제궁 옆 마로니에 농장'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03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저작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19. 10. 02. 출간된 소설로써, 도서판매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 중임.

(SW '스케치업 프로 SketchUp Pro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03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SW저작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로써,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순번 3번~491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49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5532호~45533호(순번 1번~2번)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45534호~46022호(순번 3번~49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5. 25.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